

## 「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」 수혜기업 3차 모집 공고

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, (사)한국수소연합, 전라남도,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전남 지역 「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」을 추진하며 다음과 같이 수혜기업을 모집하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7월

(재)녹색에너지연구원장

### 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협약일 ~ 2025. 10. 31.
- 모집기간 : 공고일 ~ 2025. 8. 4.(월) 18:00까지
- 사업목적
  - 전라남도 내 예비수소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
  -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과 전남 수소산업 육성 정책의 연계 추진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
- 지원요건 ※ ①, ②, ③-1(테크패키지, 비즈패키지) 또는 ①, ②, ③-2(엔트리패키지)의 요건을 만족해야함

구분	테크패키지 또는 비즈패키지 지원요건	엔트리패키지 지원요건
전남지역 소재 여부	① 전남 지역에 본사, 공장, 지사, 연구소 등이 소재한 기업(단순 영업소 제외)	
수소전문기업 지정 여부	②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	
‘수소산업’분야 기술력 또는 매출실적, 계획 유무	③-1 ‘수소산업’ 분야 기술력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	③-2 ‘수소산업’ 분야 기술력 또는 매출실적은 있지만 수소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소·중견기업

- ※ 사업 기간 내에 사업소 이전 시 지원금 환수조치 등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음
- ※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 신청은 사업기간 내에도 가능하지만 수소전문기업으로의 지정은 2025년 12월 이후에 가능함  
(수소전문기업 : 매출액 및 연구개발 투자금액의 일정 기준을 충족 후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 신청하여 지정받은 기업)
- ※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2호
- ‘수소산업’이란 수소의 생산·저장·운송·충전·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·부품·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.
- ※ 수소분야 기술력 보유는 특허의 ‘등록’을 기준으로 함(p.13 수소분야 기술력 및 매출실적 인정 기준 참고)  
수소분야 매출액이 없으면서 특허의 ‘등록’이 아닌 ‘출원’건만 있는 경우에는 엔트리패키지에만 지원 가능함
- ※ 신규 기업 발굴을 위해 본 지원사업으로 수혜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을 우선 지원 예정

## 2. 지원방식

- 수요맞춤형 패키지와 함께 기술닥터 컨설팅을 지원함
  - 수요맞춤형 패키지
    - 수혜기업이 공급기업(기관)을 직접 선택하여 추진함
    - 수혜기업은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함
    - 최종평가에서 사업수행 결과의 성공 여부 및 공급기업으로의 지출 증빙 서류 검토 후 수혜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함
  - 기술닥터 컨설팅
    -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닥터(맞춤형 전문가)를 매칭하고 기업당 5회 내외 자문을 지원함 ※ 1회 이상 녹색에너지연구원 담당자 동행 방문 예정
    - 수요 맞춤형 패키지 내의 컨설팅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진행됨
    - 수혜기업과 기술닥터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함
    - 자문료는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기술닥터에게 직접 지급함 ※ 총사업비 비포함

## 3. 수요맞춤형 패키지 지원금액 및 지원프로그램

-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
  - 기업당 지원규모 및 지원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지원유형을 선택함

지원유형	지원규모 (천원)	기업당 지원규모 (천원)	비고
테크패키지-1	131,643	60,000	※ 지원금액의 80%를 기술사업화 분야 프로그램 우선 신청 권장
비즈패키지	80,000	60,000	※ 지원금액의 80%를 판로개척 분야 프로그램 우선 신청 권장
엔트리패키지	58,000	26,000	

- 총사업비는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합계금액이며,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임

$$\text{총사업비} = \text{지원금} + \text{기업부담금}$$

※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0% 이상 현금으로 매칭되어야함

(40,000천원 지원받는 경우 총사업비 50,000천원 이상, 기업부담금 10,000천원 이상)

※ 협약한 기업부담금을 지원금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하며, 협약 후 공급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기업부담금을 증액하여 집행해야함

※ 부가세는 기업이 별도로 집행해야함

-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비 사용 계획, 지원유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며, 이에 따라 지원금액, 지원유형이 변동될 수 있음

※ 노트북, 태블릿 등 범용성 비품, 항공료, 숙박료 등 경비성 비용은 지원 불가

## ○ 지원 프로그램

- 신청기업이 선택한 2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업당 지원규모 및 세부내용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함

구분	지원 프로그램명	세부내용	지원한도 (천원)																
기술 사업화	시제품 제작	<b>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 제작 및 성능확인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기간 내 시제품 제작 완료 또는 공인시험 성적서 또는 시험결과보고서 제출 必</li> </ul> <p>※ 시제품 제작 없이 성능확인만 별도로 신청 가능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설계비</td><td>■ 위킹목업 또는 금형제작을 추진해야 지원 가능</td></tr> <tr> <td>재료비</td><td>■ 시제품 제작용 재료, 원료, 부품 등 구입</td></tr> <tr> <td>외부제작</td><td>■ 외부 설계·가공·제작</td></tr> <tr> <td>성능확인</td><td>■ 기존 제품, 신제품, 시제품 등의 성능 분석 및 평가</td></tr> <tr> <td>기계장치</td><td>■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계 또는 설비 사용료(대여료)</td></tr> <tr> <td>※ 지원 제외</td><td></td></tr> <tr> <td>- 양산용 금형제작, 원재료 구입, 기계 또는 설비 구입</td><td></td></tr> <tr> <td>- 기업 자체 성능 분석 및 평가 비용</td><td></td></tr> </table>	설계비	■ 위킹목업 또는 금형제작을 추진해야 지원 가능	재료비	■ 시제품 제작용 재료, 원료, 부품 등 구입	외부제작	■ 외부 설계·가공·제작	성능확인	■ 기존 제품, 신제품, 시제품 등의 성능 분석 및 평가	기계장치	■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계 또는 설비 사용료(대여료)	※ 지원 제외		- 양산용 금형제작, 원재료 구입, 기계 또는 설비 구입		- 기업 자체 성능 분석 및 평가 비용		40,000
설계비	■ 위킹목업 또는 금형제작을 추진해야 지원 가능																		
재료비	■ 시제품 제작용 재료, 원료, 부품 등 구입																		
외부제작	■ 외부 설계·가공·제작																		
성능확인	■ 기존 제품, 신제품, 시제품 등의 성능 분석 및 평가																		
기계장치	■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계 또는 설비 사용료(대여료)																		
※ 지원 제외																			
- 양산용 금형제작, 원재료 구입, 기계 또는 설비 구입																			
- 기업 자체 성능 분석 및 평가 비용																			
설계비																			
재료비																			
외부제작																			
성능확인																			
기계장치																			
※ 지원 제외																			
인증 획득	<b>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인증 평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기간 내 인증서 발급 및 증빙서류 제출 必(발급 진행 중인 경우 입증가능 서류 제출)</li> <li>■ 대행비는 지원금의 50% 이내로 지원 신청 가능</li> <li>■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 必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인증비</td><td>■ 인증서 발행비, 인증신청비, 연회비, 심사비,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</td></tr> <tr> <td></td><td>■ 심사비 :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, 서류심사 등</td></tr> <tr> <td></td><td>■ 법정대리인 선임비 : 인증(또는 등록)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(책임자)을 선임해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</td></tr> <tr> <td>시험비</td><td>■ 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서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(TEST)한 비용</td></tr> <tr> <td>대행비</td><td>■ 인증 획득을 위한 통·번역비, 컨설팅비, 예비심사비, 교육비, 인증대행 수수료 등</td></tr> <tr> <td>※ 지원 제외</td><td></td></tr> <tr> <td>- 인증비 신청 없이 시험비 또는 대행비만 지원 신청 불가</td><td></td></tr> <tr> <td>- 컨설팅 없이 독자적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 시 컨설팅비 지원 제외</td><td></td></tr> <tr> <td>- 법정검사는 인증으로 구분하지 아니함 (예.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설검사 등)</td><td></td></tr> </table>	인증비	■ 인증서 발행비, 인증신청비, 연회비, 심사비,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		■ 심사비 :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, 서류심사 등		■ 법정대리인 선임비 : 인증(또는 등록)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(책임자)을 선임해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	시험비	■ 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서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(TEST)한 비용	대행비	■ 인증 획득을 위한 통·번역비, 컨설팅비, 예비심사비, 교육비, 인증대행 수수료 등	※ 지원 제외		- 인증비 신청 없이 시험비 또는 대행비만 지원 신청 불가		- 컨설팅 없이 독자적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 시 컨설팅비 지원 제외		- 법정검사는 인증으로 구분하지 아니함 (예.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설검사 등)	
인증비	■ 인증서 발행비, 인증신청비, 연회비, 심사비,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																		
	■ 심사비 :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, 서류심사 등																		
	■ 법정대리인 선임비 : 인증(또는 등록)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(책임자)을 선임해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																		
시험비	■ 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서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(TEST)한 비용																		
대행비	■ 인증 획득을 위한 통·번역비, 컨설팅비, 예비심사비, 교육비, 인증대행 수수료 등																		
※ 지원 제외																			
- 인증비 신청 없이 시험비 또는 대행비만 지원 신청 불가																			
- 컨설팅 없이 독자적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 시 컨설팅비 지원 제외																			
- 법정검사는 인증으로 구분하지 아니함 (예.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설검사 등)																			
인증비																			
시험비																			
대행비																			
※ 지원 제외																			
- 인증비 신청 없이 시험비 또는 대행비만 지원 신청 불가																			
- 컨설팅 없이 독자적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 시 컨설팅비 지원 제외																			
- 법정검사는 인증으로 구분하지 아니함 (예.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설검사 등)																			
지식 재산권	<b>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조사분석·출원·등록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기간 내 지식재산권의 출원 완료 및 증빙서류 제출 必</li> <li>■ 기업의 명의로만 지식재산권의 권리자(출원인) 가능</li> <li>■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출원 인정</li> <li>■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만 출원 인정하며,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권리화</td><td>■ 국내 특허·디자인 출원 지원</td></tr> <tr> <td></td><td>■ 국외 출원, PCT 국제출원 지원</td></tr> <tr> <td>특허분석</td><td>■ 국내외 등록된 선행 특허 조사 및 분석 등</td></tr> <tr> <td>※ 지원 제외</td><td></td></tr> <tr> <td>- 공동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가출원은 지원 제외</td><td></td></tr> </table>	권리화	■ 국내 특허·디자인 출원 지원		■ 국외 출원, PCT 국제출원 지원	특허분석	■ 국내외 등록된 선행 특허 조사 및 분석 등	※ 지원 제외		- 공동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가출원은 지원 제외		5,000							
권리화	■ 국내 특허·디자인 출원 지원																		
	■ 국외 출원, PCT 국제출원 지원																		
특허분석	■ 국내외 등록된 선행 특허 조사 및 분석 등																		
※ 지원 제외																			
- 공동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가출원은 지원 제외																			
권리화																			
특허분석																			
※ 지원 제외																			
기술도입· 보호	<b>국내외 기술 도입 또는 기술 보호(보안, 유출방지 등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기간 내 기술매매(라이센스) 계약체결 및 기술이전료(실시료) 납부 증빙서류 제출 必</li> <li>■ 국내외 등록된 대학, 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에 한함</li> <li>■ 지식재산권의 권리자(출원인)가 신청기업 명의인 경우만 인정</li> <li>■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로 출원된 경우만 인정</li> <li>■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만 출원 인정하며,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기술도입</td><td>■ 특허 도입(권리 명의이전)으로 인한 이전비·증개비 등</td></tr> <tr> <td></td><td>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도 비용 등</td></tr> <tr> <td>기술보호</td><td>■ 기술보호 상담·자문,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,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등</td></tr> <tr> <td>라이센스</td><td>■ 라이센스 계약체결 비용 등</td></tr> <tr> <td>※ 지원 제외</td><td></td></tr> <tr> <td>- 특허를 포함하지 않고 노하우 및 기술자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</td><td></td></tr> <tr> <td>- 기술양도는 지원 제외</td><td></td></tr> </table>	기술도입	■ 특허 도입(권리 명의이전)으로 인한 이전비·증개비 등		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도 비용 등	기술보호	■ 기술보호 상담·자문,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,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등	라이센스	■ 라이센스 계약체결 비용 등	※ 지원 제외		- 특허를 포함하지 않고 노하우 및 기술자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		- 기술양도는 지원 제외					
기술도입	■ 특허 도입(권리 명의이전)으로 인한 이전비·증개비 등																		
	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도 비용 등																		
기술보호	■ 기술보호 상담·자문,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,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등																		
라이센스	■ 라이센스 계약체결 비용 등																		
※ 지원 제외																			
- 특허를 포함하지 않고 노하우 및 기술자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																			
- 기술양도는 지원 제외																			
기술도입																			
기술보호																			
라이센스																			
※ 지원 제외																			
- 특허를 포함하지 않고 노하우 및 기술자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																			
- 기술양도는 지원 제외																			
연구장비 활용	<b>국가연구시설 또는 지역 기관 등의 연구 장비 활용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기간 내 장비 활용료 납부 및 장비 활용 결과물 제출 必</li> <li>■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ZEUS(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, zeus.go.kr) 등을 통하여 국가연구시설·장비 예약 및 이용</li> </ul>	10,000																	

판로 개척	제품 고급화	<b>기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성능개선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기간 내 제품 제작 완료 또는 공인시험 성적서 또는 시험결과보고서 제출 必</li> </ul> <p>※ 제품 제작 없이 성능확인만 별도로 신청 가능</p>		30,000	
		설계비	■ 위킹목업 또는 금형제작을 추진해야 지원 가능		
		재료비	■ 시제품 제작용 재료, 원료, 부품 등 구입		
		외부제작	■ 외부 설계·가공·제작		
		성능확인	■ 기존 제품, 신제품, 시제품 등의 성능 분석 및 평가		
		기계장치	■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계 또는 설비 사용료(대여료)		
		※ 지원 제외		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양산용 금형제작, 원재료 구입, 기계 또는 설비 구입</li> <li>- 기업 자체 성능 분석 및 평가 비용</li> </ul>			
	시장조사	<b>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기간 내 시장조사 보고서 파일 제출 必</li> </ul>		10,000	
		시장조사	■ 국내외 생산동향, 수입·수출동향, 경쟁사 등 조사		
		제품비교	■ 국내외 경쟁 제품 수준 비교평가 및 분석		
	디자인 개선	<b>신규 및 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기간 내 시장 출시 할 수 있는 제품도 신청 가능</li> <li>■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전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통한 비용 지원 가능</li> </ul>		30,000	
	BI·CI 개발	<b>BI(Brand Identity) 및 CI(Corporate Identity) 개발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전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통한 비용 지원 가능</li> </ul>		10,000	
	홍보	<b>기업·제품·기술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, 동영상, 홈페이지 등 제작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기획, 디자인, 외국어 번역 비용 등</li> </ul>		10,000	
		홍보물	■ 인쇄용 또는 전자용 브로슈어·리플렛·팸플렛·카탈로그, 동영상, 홈페이지, 배너 등 제작		
		온라인 광고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키워드 광고비(ex. 네이버 키워드 광고, 구글 키워드 광고 등)</li> <li>■ 배너 광고비(ex. 네이버 배너, 카카오톡 광고 등)</li> <li>■ 소셜 마케팅 광고비(ex. 유튜브 광고, 인스타그램 광고 등)</li> <li>■ 온라인 언론 및 인터뷰</li> </ul>		
		방송 광고비	■ TV, 라디오 등 매체 방송광고비		
		<b>전시회 부스 임차설치, 비품 임차, 전시회 참가, 전시 장치 설치 등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원한도 내 다수의 전시회 참가 지원 가능</li> <li>■ 홍보물에는 전시회 로고 및 내용이 표시되어야 함(전시회에서 활용하는 홍보물에 대해서만 전시회 프로그램 비용으로 지원 가능)</li> </ul>			
	전시회	국내 온라인	■ 참가비, 온라인 홍보자료 제작비	10,000	
		국내 오프라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부스임차, 설치비용, 비품임차(회사명 사인보드, 선반, 전시대, 상담용 탁자 및 의자, 안내데스크 등), 전기 및 인터넷 등 사용료</li> <li>■ 홍보물(카탈로그, 현수막, 영상물 등) 제작비</li> </ul>		
		국외 온라인	■ 참가비, 통역비, 바이어 매칭비, 홍보물 제작비		
		국외 오프라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부스임차, 설치비용, 비품임차(회사명 사인보드, 선반, 전시대, 상담용 탁자 및 의자, 안내데스크 등), 전기 및 인터넷 등 사용료</li> <li>■ 홍보물(카탈로그, 현수막, 영상물 등) 제작비</li> <li>■ 통역비</li> </ul>		
		<p>※ 지원 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산 취득으로 보여지는 물품 구매 또는 제작(상담용 탁자 및 의자, 안내데스크 등)</li> <li>- 전시회참가용이 아닌 기업 카탈로그, 팜플릿, 배너 등 제작을 위한 비용(전시회 로고 및 내용이 없는 경우)</li> <li>- 현지 체재비, 전시회 참가취소 수수료, 비자 발급비, 민간 에이전트, 협/단체를 통해 참가 시 발생하는 수수료, 산정 환율차이에 따른 차액(외화 결제 시, 적용 환율 차이에 따라 발생되는 차액),</li> <li>- 은행/카드사를 통해 송금 및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</li> <li>- 이벤트성 전시회와 같은 오픈마켓(팝업스토어 포함) 등 참가</li> <li>- 타 지역 계열사·타사 명의사용·타사 공동참가</li> </ul>			

컨설팅	컨설팅	기술력 향상, 경영, 마케팅, 인증 등 컨설팅	
		■ 사업기간 내 컨설팅 보고서 파일, 컨설팅 일지(일시, 내용, 사진) 제출 必	
		경영	■ 세무, 회계, 노무, 경영, 재무, 특허, 법률 등
		마케팅	■ SNS 마케팅, 수출 절차 전략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
		투자유치	■ IR(Investor Relations) 컨설팅, 국·내외 투자유치 전략수립, IR자료 작성 등
		인증획득	■ 국내외 인증획득(용품검사 포함)을 위한 컨설팅
		정보보안	■ 지식재산권 상담, 경쟁사와의 분쟁예방 등 기술보호·유출관련 특허법인 등과의 상담 자문 관련 ■ 해외 개인정보보호(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(GDPR), 미국소비자보호법(CCPA)) 등
		화학물질	■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 ■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등
		스마트 공장	■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
		조달청	■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」(조달청고시)에 지원
기타	맞춤형 지원	그 외 현재 기업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	
		■ 사업기간 내 결과물 제출 必	10,000

※ (예시) 테크패키지-1로 시제품제작 40,000천원, 이중화등 8,000천원, 커설틱 4,000천원에 대하여 지원 시청하는 경우

(단위: 천원)

지원프로그램명		지원금 (기업당 60,000천원 내외) [국비 및 지방비]	기업부담금 [총사업비의 20% 이상]	총사업비 (공급가액)	부가세 (기업에서 별도 집행) [공급가액의 10%]
1	시제품제작	40,000	10,000	50,000	5,000
2	인증획득	8,000	2,000	10,000	1,000
3	컨설팅	4,000	1,000	5,000	500
합계		52,000	13,000	65,000	6,500

※ (예시) 엔트리파키지로 시장조사 10,000천원, 전시회 8,000천원에 대하여 지원 신청하는 경우

(단위: 천원)

지원프로그램명		지원금 (기업당 26,000천원 내외) [지방비]	기업부담금 [총사업비의 20% 이상]	총사업비 (공급가액)	부가세 (기업에서 별도 집행) [공급가액의 10%]
1	시장조사	10,000	2,500	12,500	1,250
2	전시회	8,000	2,000	10,000	1,000
합계		18,000	4,500	22,500	2,250

## 4. 추진일정

### ○ 추진일정

- 모집공고 및 서류 제출 : 공고일 ~ 8. 4.

※ 공고확인: 녹색에너지연구원 홈페이지(<http://www.gei.re.kr> – 알림마당 – 기업지원공고)

- 서류 사전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: 2025. 8. 5. ~ 8. 12.

- 선정평가 : 2025. 8월 중

※ PPT 발표자료 파일은 8. 12.(화) 18:00까지 이메일 제출, 인쇄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

- 선정결과 통보 : 2025. 8월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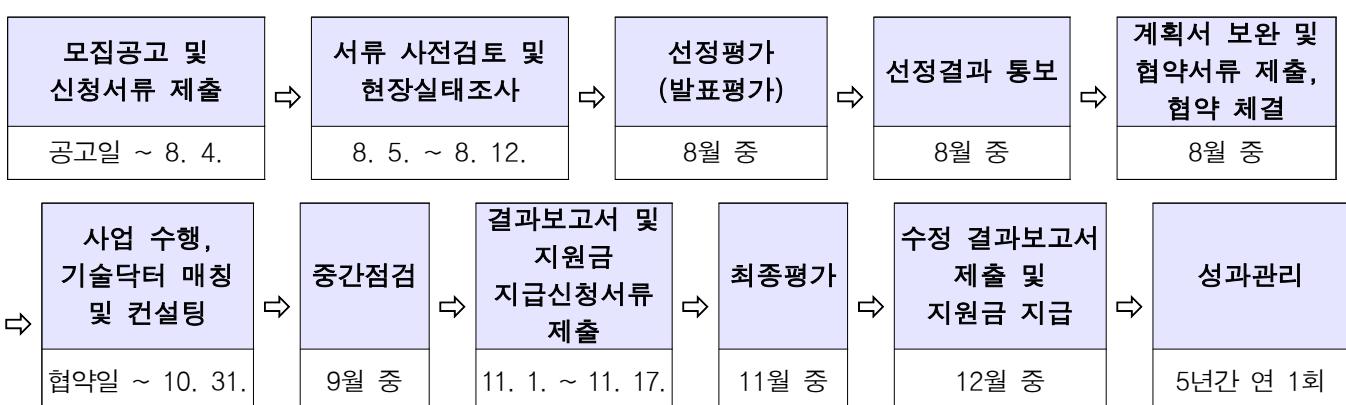
- 계획서 보완 및 협약 체결 : 2025. 8월 중

- 사업 수행 : 협약일 ~ 2025. 10. 31.

- 기술닥터 매칭 및 컨설팅 : 협약일 ~ 2025. 10. 31.

-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: 2025. 11월 중

- 지원금 지급 : 2025. 12월 중



※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## 5. 신청서류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

- 제출기간 : 공고일 ~ 8. 4.(월) 18:00까지

- 제출방법 : 이메일 제출(PDF 및 한글파일)

제출처 및 문의처
제출처 : jechoi31@gei.re.kr (58656) 전라남도 목포시 삼향천로 177 녹색에너지연구원 녹색에너지실 수소산업팀 최지은 선임연구원 문의처 : 전영길 수소산업팀장 (061-288-1071) 최지은 선임연구원 (061-288-1072) 박홍란 선임연구원 (061-288-1073)

※ 신청서류 작성 시작할 때에 담당자에게 지원 대상 기업 여부 및 패키지 유형 확인 요망

## ○ 제출서류

연번	제출서류	필수 (PDF, HWP)	서식 1
1	사업신청서 * 지정된 KSIC코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(공장등록증 등)	필수 (PDF, HWP)	서식 1
2	사업계획서	필수 (PDF, HWP)	서식 2
별첨	프로그램별 상세내용	필수 (PDF, HWP)	별첨
3	기업소개서	필수 (PDF, HWP)	서식 3
4	수소분야 기술력 및 매출실적 기술서 * 증빙 또는 설명 자료 첨부	필수 (PDF, HWP) 선택 (PDF)	테크패키지 비즈패키지 엔트리패키지 서식 4
5	수소분야 기술력 및 매출실적 인정 기준 및 증빙 서류	필수 (PDF) 선택 (PDF)	테크패키지 비즈패키지 엔트리패키지 <참고1> 서식 5
6	기업 애로 조사서	필수 (PDF, HWP)	서식 6
7	수혜기업 연구개발 역량 확인서	필수 (PDF, HWP)	<참고2> 서식 7
8	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	필수 (PDF, HWP)	서식 8
9	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	필수 (PDF, HWP)	서식 9
10	수행기업 부담금(현금) 출자 협약서	필수 (PDF, HWP)	서식 10
11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* 참여자 전원(대표자, 총괄책임자, 실무담당자, 기획위원 등)	필수 (PDF, HWP)	서식 11
12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관련 동의서	필수 (PDF, HWP)	서식 12
13	평가위원 추첨표	필수 (PDF, HWP)	<참고3> 서식 13
14	견적서 및 비교견적서	필수 (PDF, HWP)	서식 14
15	사업자등록증 사본[원본대조필] 및 법인등기부등본[원본대조필] * 법인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	필수 (PDF)	-
16	공장등록증 사본[원본대조필]	선택 (PDF)	-
17	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(2022년, 2023년, 2024년) * 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	필수 (PDF)	-
18	최근 3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2022년, 2023년, 2024년)	필수 (PDF)	-
19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* 유효기간 확인하여 제출	필수 (PDF)	-

※ 제출서류 목록의 [연번. 제출서류명\_기업명] 기재하여 압축파일로 제출

(PDF파일명 예시) 1. 사업신청서\_(주)○○○.pdf ~ 19.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\_(주)○○○.pdf / 별첨-1. 시제품제작\_(주)○○○.pdf /  
별첨-2. 인증획득\_(주)○○○.pdf / 별첨-12. 컨설팅\_(주)○○○.pdf

(한글파일명 예시) 별첨-2. 신청서류 서식\_(주)○○○.hwp / 별첨-1. 시제품제작\_(주)○○○.hwp / 별첨-2. 인증획득\_(주)○○○.hwp /  
별첨-12. 컨설팅\_(주)○○○.hwp

※ 제출서류 중 직인날인본/서명본(1, 7, 8, 9, 10, 11, 12, 13, 15, 16)은 현장실태조사일에 제출

## 6. 선정절차 및 기준

### ○ 서류 사전검토

-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자격 검토
-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
  - 사업내용이 지원목적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  - 신청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(지자체 포함)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
  - 기업이 부도, 휴.폐업 상태인 경우
  - 국세.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
  -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
  - 개인회생.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
  -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인 경우
- 신청제한,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

※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

- 외감 기업의 경우, 최근 연도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 또는 ‘부적정’ 인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 또는 지원된 경우(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서 이미 생산·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)

### ○ 현장실태조사 ※ 기업별 30분 내외 질의응답 및 현장 확인

- 제출서류 직인날인본/서명본 수령 및 확인
- 현장실태조사항목 파악 및 조사표 작성

조사항목	세부내용
인프라 현황(생산시설 확인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공장/작업장 유무</li><li>• 연구소 보유 현황</li></ul>
지원 프로그램 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지원 프로그램 내용</li><li>• 제품(기술)의 경쟁력 및 차별성</li><li>• 사업비 적정성</li><li>• 향후 활용 방안</li></ul>
기업 역량(업력, 인력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주력제품</li><li>• 제품(기술) 주요 현황</li><li>• 인력현황</li><li>• 재무현황</li><li>• 국책과제 수행여부</li></ul>

## ○ 선정평가

- 평가범위 : 신청서류 및 PPT 발표     \* PPT 발표 15분, 질의응답 15분 이내
- 평가방법 : 관련 분야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(5인 내외, 위원장 1인 포함)를 통해 종합적 평가 및 선정
- 평가항목 :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, 수소전문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 성과 및 기대효과에 대한 항목 평가

평가항목		세부내용	배점
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[50점]	기업현황 [10점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사업과 지원신청 내용과의 정합성</li> </ul>	5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현황의 적합성(업종, 참여인력, 매출액 등)</li> </ul>	5
	추진목표 달성 가능성 [20점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종목표 설정의 구체성</li> </ul>	10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종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</li> </ul>	10
	사업계획 및 전략의 적정성 [20점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</li> </ul>	10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의 역량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</li> </ul>	5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문성 및 역량을 고려한 추진체계 구성 여부</li> </ul>	5
사업추진 체계 [10점]	지원체계 구성의 적정성 [10점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기업 및 공급기업(물품, 서비스 등) 구성의 적정성</li> <li>• 전문성 및 역량을 고려한 추진체계 구성 여부</li> </ul>	10
성과 및 기대효과 [35점]	성장 가능성 및 경제 기여도 [35점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소전문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(수소전문기업 지정 신청 요건 달성 가능성) ※ 총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매출액, 수소사업 연구개발투자금액</li> </ul>	10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술적 성과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 기여도</li> </ul>	10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매출, 수출 등 경제적 성과 확대 가능성</li> </ul>	10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역사회 고용창출 확대 기여도 ※ 2025년 신규고용 예정 인원 및 예상기여율</li> </ul>	5
사업비 구성 [5점]	사업비의 적정성 [5점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</li> <li>• 지원프로그램별 예산편성 및 배분의 적정성</li> </ul>	5
합계			100

## - 점수 산출 방법

- 점수 집계시 최고점,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의 산술 평균점수로 산출
-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높은 점수를 득한 기업 선정
- 평가위원 중 신청 기업과의 연관성 및 사업 참여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평가에 영향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적용

## 7.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

### ○ 신청서류 작성 관련 유의사항

-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, 지원금액과 기업 부담금을 합한 총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
- 본 사업은 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”, “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”이 적용됨
- 공급기업 업체당 2천만원(공급가액) 이상 거래 시에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추진 고려 또는 수의계약 가능 여부 확인 필요

※ (1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2천만원 이상 거래인 경우) 나라장터 계약서 또는 소기업확인서/여성기업확인서/특허 기술 보유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

-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(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)
- 신청서류를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### ○ 신청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

- 신청서류 양식을 준수하여 상세히 작성 후 제출 요망
- 신청서류 작성 불성실, 공란 또는 명확하지 않은 내용 제출, 제반서류 미제출(누락) 시 사전검토에서 신청 제외될 수 있음
- 제출서류에 허위 내용이 있는 경우 선정취소, 협약 해약, 지원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하거나 신청과제 내용의 중복 여부, 현장실태조사 시 부적합 판정 기업의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- 신청서류 접수 후 별도 서면 자료 등 추가 요청자료가 있을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## ○ 평가 관련 유의사항

- 공고문 및 관련 규정(지침, 기준)을 위배했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수혜기업을 선정하며,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신청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## ○ 선정 후 유의사항
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‘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’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기업에게 있음
-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, 지원사업 참여제한,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 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비 환수·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함

## ○ 선정기업의 의무

- 사업비 집행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별도의 사업비 계좌 (잔액 0원)를 통해 입·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, 협약 전에 기업 부담금을 사업비 계좌로 선입금해야 함(협약 시 입금확인증 제출)
- 선정기업은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기간 내에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함

※ 지원 프로그램 결과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금 지급 가능

- 선정기업은 협약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에 승인 요청 또는 통보해야 함 (협약 금액 변경, 대표자 또는 참여연구원 변경, 공급기업 변경, 소재지 변경 등)

-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, 현장확인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  - 선정기업은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사후관리 및 성과보고 관련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  - 지원금 지급 절차 안내
    - 지원금은 최종평가 후 수혜기업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   - 수혜기업이 사업비 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금액을 추가 입금하여 공급기업 쪽에 지출하고 결과보고 시에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함
- ※ 지출 증빙서류
-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, 공급가액 및 부가세 이체확인증, 거래명세서,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, 거래명세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, 결과물 증빙자료(검수조서 등) 순으로 지원 프로그램별 각 1부
  - (1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2천만원 이상 거래인 경우) 나라장터 계약서 또는 소기업확인서/여성기업확인서/ 지식재산권 관련 증빙서류
- 부득이하게 지원금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50% 이내로 선지급 가능(녹색에너지연구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지급보증보험증권, 선금사용 계획서 제출)
  - 최종평가에서 불인정(70점 미만)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며, 지원금을 이미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분에 대하여 환수함

**참고****수소분야 기술력 및 매출실적 인정 기준 및 증빙 서류 안내****□ 수소분야 기술력에 대한 증빙 서류****○ 수소분야 특허등록증**

※ 수소분야 기술력 보유 인정 기준은 특허의 ‘등록’을 기준으로 함

(수소분야 매출액이 없으면서 특허의 ‘등록’이 아닌 ‘출원’ 건만 있는 경우에는 엔트리패키지에만 지원 가능함)

**□ 수소분야 매출실적에 대한 증빙 서류**

구 분	비 고
전자세금계산서	- 품목상 수소관련 키워드가 기입되어있거나,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계산서
납품실적증명원 혹은 사업실적증명원	-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불가시 제출
수출신고필증	- 수출액 증빙 서류
기타 인정 가능한 공신력 있는 서류	- 원청기업의 수소분야 활용 및 납품 확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문 등

※ 상기 서류로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없을 경우, 납품 확인서 서식(붙임2 내 [서식5])을 참조하여 제출

**□ 매출 인정 기준**

분 야	대 상	인정 기준
제품(부품) 제조 및 판매	국내	수소관련 제품
		수소관련 부품
		수소관련 소재
		수소관련 장비
	국외	수입 판매
수소의 생산, 저장, 유통, 판매		부생수소
		천연가스 출입 등
		수전해
공사 및 시공		수소충전소 구축
		수소생산기지 구축
		출하설비 구축
		연료전지 시공
		수전해 설비 구축 등
기타	확인불가 매출	(기준) 매출 불인정
	예외 사항	(기준)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야

※ 상기 평가기준은 전문가 의견, 선정평가위원회 등의 인정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